

자격 검정 시행세칙



대 한 호 신 협 회

자격 검정 시행세칙

제정 2026. 1. 10.

개정 2026. 2. 12.

제1조(목적)

이 세칙은 「자격 검정 규정」에 따라 지도자 자격 검정의 과목, 배점, 합격 기준, 연수 교육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검정 수수료)

자격 검정 및 연수 비용은 다음과 같다.

1. 2급 지도자 : 검정료 50,000원 / 연수비 150,000원
2. 1급 지도자 : 검정료 70,000원 / 연수비 200,000원
3. MASTER : 검정료 100,000원 / 연수비 250,000원
3. 자격증 발급비(카드형+상장형) : 20,000원

제3조(실기 심사 채점 기준)

실기 심사는 심사위원 3인 이상이 평가하며, 100점 만점에 다음 항목을 배점한다.

1. 정확성(40점) : 기술 구사의 정확도 및 숙련도
2. 파워/속도(30점) : 기술의 위력, 민첩성, 연결 동작
3. 태도/예절(30점) : 복장, 기합 소리, 예의, 시선 처리

제4조(보수 교육)

- ① 보수 교육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.
- ② 보수 교육비는 50,000원으로 한다.
- ③ 보수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자격은 정지되며, 보수 교육 이수 즉시

효력이 발생한다.

제5조(자격증 기재 사항)

자격증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.

1. 자격 명칭 및 등급
2. 성명 및 생년월일
3. 자격 번호 (예: 2026-3-0001)
4. 발급 일자 및 유효 기간
5. 발급 기관장(회장)의 직인

제6조(제출 서식)

1. 자격 검정 응시 원서 [별지 제1호 서식]
2. 실기 심사 채점표 [별지 제2호 서식]
3. 자격증 갱신 신청서 [별지 제3호 서식]

제7조(발전기금의 배분)

- ① 본회는 강사 교육 및 자격증 발급으로 발생한 총 수입의 10%를 해당 회원의 소속 시·도 지부에 지부 발전기금으로 지급한다.
- ② 제1항에 따라 발전기금을 수령한 시·도 지부는 수령한 금액의 10%를 해당 회원의 소속 시·군·구 지부에 재배분하여 지급하여야 한다.
- ③ 발전기금의 정산 및 지급은 매 분기 말(3월, 6월, 9월, 12월)을 기준으로 익월 10일까지 처리한다.

제8조 (외부 강의 수수료 및 면제)

- ① 협회의 추천 또는 자격 명칭을 사용하여 진행하는 외부 강의의 경우, 강

사는 협회의 행정 지원 및 브랜드 사용에 대한 대가로 소정의 수수료(발전기금)를 납부하여야 한다.

② 수수료는 강의료 총액(세전 기준)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차등 적용한다.

- 300,000원 미만 : 전액 면제 (강사 본인 수익 100%)

- 300,000원 이상 : 강의료 총액의 10%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, 협회와 별도의 계약(MOU 등)이 체결된 기관의 강의나 재능 기부 강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이사회의 승인 된 날부터 시행한다.